

의안번호	2206549
의 퇴 인	백혜련 의원
회 답 일	2024.12.30.
추계번호	24C5973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6조의2(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)	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2	안 제36조의2(영유아 가정방문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환경 파악, 아동 양육에 대한 상담,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양육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2(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6조의2(영유아 가정방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아동의 보호자 등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아닌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·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아동의 보호자 등이 관련 교육 및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두텁게 하는 것이 목적

가.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(안 제26조의2)

- 개정안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라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고,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선택적으로 받고 있음
 -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, 아동의 보호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음
 - 관련 사업으로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 사업(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)을 실시하고 있음(2024년 예산 10억 7,200만원)

-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교육 이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부가 관련 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나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 수강 모집단(임산부 및 그 배우자의 수,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수)과 기존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 또는 신청을 통하여 수강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
 - 또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, 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액된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비 및 인건비, 관련 유사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영유아 가정방문(안 제36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(2024년 예산 433억 3,100만원)을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에만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 - 2019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기관련 사업(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등)을 운영하고 있으나,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음
 - 또한 전국 229개 시·군·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(2024년 6월 기준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는 총 875명)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·점검을 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른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가정방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님

-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양육환경 파악 및 상담을 수반하는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와 현행 유사사업(상담 및 가정방문)에 참여한 영유아 양육 가정의 수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
 - 또한 개정안에 따라 가정방문 상담을 수행하는 추가 상담사 수 및 인건비, 사업의 확대에 따른 운영기관 및 행정인력의 규모, 세부적인 사업의 운영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